

## '18. 3월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공개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공개대상**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 **공개기한** ☞ 2018년 4월 2일 까지

● **공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 홈택스 로그인 > 공익법인공시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 **문의전화** ☞ [홈택스 문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09:00 ~ 18:00  
[기 타 문 의] 뒷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주요 의무사항 및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주요 의무사항 및 제도 안내

## 지정기간 의무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36 ⑤·⑥, §36의2 ⑧·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그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정관)</li> <li>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정관)</li> <li>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정관)</li> <li>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li> <li>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li> <li>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법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은 4번, 6번만 해당</li> </ol>
의무이행 점검보고	2년마다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 (제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 의무사항 등 위반시 제재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36 ⑤·⑧~⑩·⑬, §36의2 ⑪·⑬·⑭, 국세기본법 시행령 §66 ⑩)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기부금단체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li> <li>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li> <li>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li> </ul>

## 기부장려금제도 (조세특례제한법 §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1)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지정 요건을 충족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합니다.

☞ (지정절차) 기부금단체가 5월, 11월에 국세청에 신청 → 국세청장이 7월말, 1월말까지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말, 3월말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공익법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